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86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소식지와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타 위원회와 동일한 임기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